

(주)더블유쇼핑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 [명칭]

본 위원회는 '(주)더블유쇼핑 시청자위원회(이하 '위원회')'라 칭한다.

제2조 [목적]

본 규정은 방송법 제 87조 및 제 88조와 동법 시행령 제 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24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,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[후보자 공모]

-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- ②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,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.
-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(지원서, 추천단체 추천서), 접수 방법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위원 결격사유,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다.

제4조 [후보자 추천]

- 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.
- ② 후보자 공모결과,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5조 [추천 단체]

- 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청자위원 추천단체를 규정한다.
- ②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초.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 체



- 2. 소비자보호단체
- 3. 여성단체
- 4. 청소년관련 단체
- 5. 변호사단체
- 6. 언론관련 시민.학술단체
- 7.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
- 8. 노동단체
- 9. 경제단체
- 10. 문화단체
- 11. 과학기술 단체
- 12. 인권단체
- 13. 외국인 관련 단체(외국어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)
- 14. 물류·유통 관련 단체(방송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)
-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
 - 2.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

제6조 [위원 결격 사유]

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.

-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
- ②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공무원 및 법관 제외)
-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
- ④ 기타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
- 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(시청자위원 추천단체)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
제7조 [선정위원회 개최]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W쇼핑이 위촉한다.
- ③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W쇼핑이 자율적으로 정한다.
- ④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, 연령,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.



- ⑤ 후보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.
- ⑥ W쇼핑은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 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(단,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.)

제8조 [임기 및 연임]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위촉 시 정해 진 임기는 임기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2개월 이내에 추천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 한다.
- ③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단,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연임 여부는 위원의 출석, 의견제시, 위원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.

제9조 [시청자위원 구성]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신한다.

제10조 [시청자 위원 권한과 직무]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2.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3. 시청자평가원의 선임
- 4.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
-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1조 [위원회 운영]

-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

- 3. 대표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
- ② 회의의 사회는 위원장이 담당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회의에는 각 본부의 주요책임자가 출석하여 질의에 응하도록 한다.
- ⑤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과 시정, 건의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에게 통보 및 검토하게 하여 방송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⑥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 결과를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①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 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® W쇼핑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,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.
- ⑨ W쇼핑은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위원의 발언 내용,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.(단,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.)
- ⑩ W쇼핑은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12조 [수당 등]
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㈜더블유쇼핑이 부담하고 위원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.

제13조 [해촉]

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방송사의 명예훼손, 제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14조 [시행]

- ①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